

5. 多世帶住宅資金 融資制度 改善

資料提供：建設部

건설부는 국민주택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자금 용자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로 하였다.

1. 상환방법 변경

- 분양주택자금과 다세대주택자금은 모두 사업주에게 용자후 분양받는 입주자에게 대환되는 동일한 성격의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상환방법에 차이가 있었음.
 - 분양주택자금 : 사업주-3년이내 정기상환
입주자-대환후 1년거치 19년상환
 - 다세대주택자금 : 사업주-1년거치 19년상환
입주자-잔여기간 승계
- 다세대주택자금의 경우에도 분양주택자금과 동일하게 사업주에게는 정기상환방식(분양주택보다 건설기간이 짧으므로 2년이내 정기상환)을 적용하고 입주자에게는 대환일로부터 1년거치 19년상환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주택가격상승 등을 기대한 사업주의 장기간 소유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용자기간의 연장으로 입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

2. 중복대출 금지

- 국민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자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중복대출문제가 발생치 않으나 다세대주택은 동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분양입주자앞으로 대환이 가능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중복대출이 허용되고 있는 바,
- 다세대주택자금 대환시 대환신청자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민영주택자금 포함)을 이미 용자받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환을 금지함으로써 동일인에 대한 이중지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수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자연속의 신도시 꿈이있는 미래도시